

보장내용 (가입하신 플랜의 담보만 보장됩니다.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www.acegroup.com/kr](http://www.acegroup.com/kr))

담보명	담보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나.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로 산출한 금액 지급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사고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입원)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한 금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통원외래)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의원급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방문 180회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방문 90회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처방전 180건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처방전 90건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질병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입원)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급여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통원외래)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의원급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방문 180회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방문 90회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선택형_2_S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부분의 합한 금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보험기간 내 처방전 180건 한도, 단,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종료일 이후 180일까지 처방전 90건 한도)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보상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 한도액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함.(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의 지급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단 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보장내용 (가입하신 플랜의 담보만 보상됩니다.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www.acegroup.com/kr](http://www.acegroup.com/kr))

담보명	담보내용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의 행방불명, 조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압비용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항공기납치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매일 70,000원씩 지급(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
신용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행중단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써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및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나.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라.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120일한도)	해외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해외여행보험II 요약약관

###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 (보통약관요약)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특별약관요약)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해외여행중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병원치료비와 국내병원에서 입원, 통원 및 통원처방 조제비용을 각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해외병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로 인한 치료비는 한 사고당/질병당 US\$1,000를 한도로 함)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보상함
    - **국내병원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한도
    - 1)입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  
상급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2)통원: 외래는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 공제, 처방조제비는 건당 8천원 공제후 보상,
    - 3)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따른 공제 후)의 40%한도
  -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또는 여행기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자기부담금(1만원)을 공제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 구원자교통비, 숙박비, 유해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합니다.
  - **항공기 납치:** 해외여행도중에서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씩 20일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위 실손의료비(상해 또는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 위의 담보항목 중 보험증권에 가입금액이 기재된 담보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유 (보통약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위의 요약약관은 해외여행보험II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요약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약관 미교부시 콜센터 1566-5800으로 요청 또는 당사 홈페이지 통해 꼭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모집질서 안내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고객센터센터)  
전화 : 1566-5800 / 팩스 : 02-3785-0015 / 인터넷 : www.acegroup.com/kr

####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